

「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2월 25일, 김성기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6년 3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6년 3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성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평창만의 특색을 가진 우수 기념품의 체계적인 보급 및 판매를 통해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, 수당 등(안 제4조 ~ 안 제7조)
-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지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(안 제12조)
- 판로개척 등 지원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25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평창만의 특색을 가진 우수기념품의 체계적인 보급 및 판매를 통해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, 수당 등(안 제4조 ~ 안 제7조)

-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지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(안 제12조)
- 판로개척 등 지원(안 제14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하여 관광기념품 다양화와 지역만의 특색있는 고유성을 확립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시책 및 지원 계획이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와 제5조, 제6조에서는 각각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, 운

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

- 안 제8조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10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 확인·점검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각각 관광기념품의 제작 및 판매와 전시판매점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4조에서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5조에서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관광진흥법**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~ ③ (생략)**

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, 2023. 6. 20., 2025. 4. 8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-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**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4의2.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
5.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

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

(김성기 의원)

의안 번호	53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김성기 의원

찬 성 자 : 김광성, 심현정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평창만의 특색을 가진 우수 기념품의 체계적인 보급 및 판매를 통해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지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라.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(안 제12조)
- 마. 판로개척 등 지원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2. 10. ~ 2026. 2. 23.(14일간), 아래 표 참조

조례안(의회안)	수정안(관광정책과)	사유	의회 의견
(조례명) 평창군 관광 기념품 개발 및 <u>지원 조례안</u>	(조례명) 평창군 관광 기념품 개발 및 <u>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</u>	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관광 기념품 사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정책적 의지 명확화	(반영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기념품”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·배포할 목적으로 <u>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·단체 등이 개발·제작하는 공예품, 토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, 공산품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기념품”이란 관광객에게 판매·홍보할 목적으로 <u>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.</u>	군수가 지정한 제품 일체로 정의를 수정함으로써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	(반영)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<u>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	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<u>군수는 제3조에 따른 책무의 수립·이행에 필요한 자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심의·자문 후 자동해산한다.</u>	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설 구조로 수정 위원회 명칭을 ‘지원’에서 ‘육성’으로 변경하여 관광기념품 사업 발전의 의미 강조	(반영)

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</u> 2. <u>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</u> 3. <u>관광기념품 판로 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</u> 4.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5.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6. <u>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</u> 7.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2.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3. 관광기념품 판로 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4.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5.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6.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에 관한 자문 7.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3조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</p>	<p>(반영)</p>
<p>신설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으</p>	<p>조례안에서 미비했던 위원회 구성, 운영, 수당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</p>	<p>(반영)</p>

	<p>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창군의회 의원 2. 관광학,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.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<p>④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.</p>		
<p>신설</p>	<p>제6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	<p>조례안에서 미비했던 위원회 구성, 운영, 수당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</p>	<p>(반영)</p>

	<p>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	
<p>신설</p>	<p>제7조(수당 등)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조례안에서 미비했던 위원회 구성, 운영, 수당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</p>	<p>(반영)</p>
<p>제5조(관광기념품 공모전등의 개최)</p> <p>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1.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</p> <p>2.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관광기념품 공모전)</p> <p>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1.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</p> <p>2.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</p>	<p>제3조에서 언급된 전시·홍보 등 지원 내용이 반복되어 삭제</p> <p>지원 시군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의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강화</p>	<p>(반영)</p>

<p>제6조(입상자에 대한 지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.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.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. 제품 전시 및 홍보 지원 3. 입상작상품화 지원 및 구매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③ 군수는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지원을 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		
<p>제7조 ~ 제11조</p>	<p>제9조 ~ 제13조</p>		<p>(반영)</p>
<p>제12조(판로개척 등 지원)</p> <p>5.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</p>	<p>제14조(판로개척 등 지원)</p> <p>5.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</p>	<p>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이미 ‘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’의 범주에 포함되는 과제</p> <p>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행정적·재정적 부담 발생</p>	<p>(반영)</p>
<p>제13조 ~ 제14조</p>	<p>제15조 ~ 16조</p>		<p>(반영)</p>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기념품”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·제작되어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관광기념품 개발·제작·상품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
2.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기념품 자체 개발
3.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지정
4.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
5. 관광기념품 전시·홍보 등 지원
6.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
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
2.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
3.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에 관한 자문
4.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평창군의회 의원
2. 관광학,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
3.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를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
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수당 등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.

제8조(관광기념품 공모전)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
2. 제품 전시 및 홍보 지원
3. 입상작 상품화 지원 및 구매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광기념품 지정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상한 작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
3. 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

제10조(사후관리)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·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정 등의 해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
2. 제10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
3.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
4.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5.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12조(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) ① 제9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

-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

- 홍보·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14조(판로개척 등 지원)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
2.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
3. 국내외 박람회,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
4. 각종 전시·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
5.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(관광기념품의 제공)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1. 설명회,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
2. 국내·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
3.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
4.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
5. 그 밖에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·유통·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

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8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
2. 관광기념품 개발·판매·유통 활성화 사업
3. 제13조에 따른 전시판매점 등 운영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관광진흥법>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

① ~ ③ (생략)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-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**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4의2.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

비용추계서 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조례안명: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

나. 관련조문: 조례안 제3조(군수의 책무)

다. 비용발생 요인: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모전 개최, 기념품 판매점 운영, 기념품의 전시·홍보 등을 위한 비용 필요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재원(군비)으로 조달
- 관광기념품 판매에 따른 수입금 발생

나. 추계 결과

○ 세입(연 기준)

구분	내용	산출기초	금 액
합 계			20,240천원
판매수입	관광기념품 판매 수입금	연 판매개수 4,400개 x 기념품 평균 판매가 4,600원	20,240천원

※ 판매개수: 2024년(4,610개), 2025년(4,232개) 판매개수의 평균

※ 판매가: 기존 관광기념품 판매 9종의 평균 판매가

○ 세출: 120,000천원

구 분	산출기초	금 액
합 계		120,000천원
공모전 개최비	- 공모전 운영비 1식: 30,000천원 (기획, 홍보, 접수, 심사, 시상 등) - 입상작 상품화 지원 및 구매비: 20,000천원	50,000천원
제작비	- 기존 관광기념품 제작비: 50,000천원	50,000천원
전시·홍보비	-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비: 20,000천원	2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: 자체재원(군비)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
연락처	(033) 330 - 2250